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9875 |
|----------|-------|

발의연월일 : 2026. 7. 9.

발 의 자 : 김한규 · 박희승 · 박균택
박선원 · 문금주 · 박정현
김준혁 · 임미애 · 한병도
이재관 · 이주희 · 천준호
김성희 · 안도걸 · 이정현
송재봉 · 전용기 · 김 윤
박상혁 · 김승원 · 이해식
서미화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인바, 그 후속조치로서 수사 및 공판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 역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기조하에 수사 관련 조항을 대폭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밖에 공소청

설치 및 검찰청 폐지 등 제도적 변화를 반영한 정비의 필요성 역시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게 하도록 하되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수사 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법체계의 마련을 통해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등).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檢事に 對한 送達)”을 “(검사에 대한 송달)”로 하고, 같은 조 중 “檢事に 對한 送達은 書類를 所屬檢察廳에 送付하여야”를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공소청에 송부하여야”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法定期間의 연장)”을 “(법정기간의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 所在地”를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공소청 소재지”로, “交通通信”을 “교통통신”으로, “大法院規則”을 “대법원규칙”으로 한다.

제71조의2 전단 중 “경찰서 유치장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에”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拘束令狀의 執行)”을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제83조의 제목 “(管轄區域 外에서의 拘束令狀의 執行과 그 囑託)”을 “(관할구역 外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檢事는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 外에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指揮할 수 있고 또는 當該 管轄區域의 檢事에게 執行指揮를 囑託할”을 “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外에서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 관리에게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司法警察官吏는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 外에서 拘束令狀을 執行할 수 있고 또는 當該 管轄區域의 司法警察官吏에게 執行을 囑託할”을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外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로 한다.

제84조의 제목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對한 搜查囑託)”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被告人의 現在地가 分明하지”를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로, “裁判長은 高등검찰청검사장”을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를 “지방공소청장에게”로, “搜查와 拘束令狀의 執行을 囑託할”을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로 한다.

제115조의 제목 “(令狀의 執行)”을 “(영장의 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但,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은”을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으로, “執行을 命할”

을 “집행을 명할”로 한다.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제137조의 제목“(拘束令狀執行과 搜索)”을“(구속영장집행과 수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사법경찰관리”로,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을 “제81조제2항에 따른”으로,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을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으로, “他人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을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로 한다.

제138조의 제목“(準用規定)”을“(준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第119條, 第120條, 第123條와 第127條의 規定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檢事, 司法警察官吏”를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제13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로, “搜索에 準用한다”를 “수색에 준용한다”로 한다.

제151조제4항 중 “경찰서유치장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 유치장에”로 한다.

제19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협

력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6조를 삭제한다.

제1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법경찰관에게”를 “그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를 “지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을 “각급 공소청의 장은”으로, “직무배제 또는”을 “직무배제, 교체 또는”으로,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보완수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완수사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⑤ 특정 수사관서에서 보완수사요구를 적정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각급 공소청의 장은 보완수사할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이하 “수사처 검사”라 한다)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수사처 검사”로 본다.

제197조의3제1항 중 “검사는”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으로, “사실의”를 “경우 검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검찰

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을 “각급 공소청의 장은”으로, “징계를”을 “직무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를 “수사과정에서”로, “피의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의자 또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사는 제19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직접 보완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1. 피의자: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2. 고소인·고발인·피해자: 수사를 개시할 때

⑩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여부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여부 및 그 처리 결과를 신고를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검사에게 신고의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신속하게 그 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가 수사 또는 시정조치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의4제1항 중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을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할”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을 “그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조정을 국무조정실에 두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신청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 절차 및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①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 요청을 하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이첩하여야 한다.

제198조제2항 중 “검사·사법경찰관리와”를 “사법경찰관리와”로, “취득한”을 “알게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사법경찰관리와”를 “사법경찰관리와”로 한다.

제198조의2의 제목 “(檢事의 逮捕·拘束場所監察)”을 “(검사의 체포·구속장소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不法逮捕·拘束의 有無를 調査하기 爲하여 檢事로”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로, “每月 1回 以上 管下搜查官署의 被疑者의 逮捕·拘束場所를 監察하게”를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점검하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監察하는 檢事は 逮捕 또는 拘束된 者를 審問하고 關聯書類를 調査하여야”를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

제200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00조의2제1항 본문 중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를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로, “檢事は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 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

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の 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の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拘留 또는 科料에”를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로, “事件에”를 “사건에”로, “被疑者가”를 “피의자가”로, “住居가”를 “주거가”로,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20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0조의3의 제목 “(緊急逮捕)”를 “(긴급체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檢事”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로,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를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로,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로, “地方法院判事の 逮捕令狀을”을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로,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할”을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緊急을”을 “긴급을”로, “被疑者를”을 “피의자를”로, “逮捕令狀을”을 “체포영장을”로, “時間的”을 “시간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司法警察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을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으로, “檢事の 承認을 얻어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을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으로, “緊急逮捕書를 作成하여야”를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로 한다.

제200조의4의 제목“(緊急逮捕와 令狀請求期間)”을“(긴급체포와 영장 청구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을“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으로,“被疑者를 拘束하고자”를“피의자를 구속하고자”로,“檢事は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の 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를“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검사는”을“검사가”로,“아니하고”를“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로,“석방한 날부터”를“검사는 석방일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를“사법경찰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보고”를“통보”로 한다.

제200조의5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00조의6의 제목“(準用規定)”을“(준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第81條第1項 本文 및 第3項, 第82條, 第83條, 第85條第1項・第3項 및 第4項”을“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으로,“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하는”을“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으로,“準用한다”를“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구속”은“체포”로,“구속영장”은“체포영장”으로 보며, 제

81조제1항 본문 중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본다.

제201조의 제목 “(拘束)”을 “(구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多額 50萬圓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犯罪에 關하여는 被疑者가 一定한 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를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을 “검사,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로,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로, “被疑者에 對하여 前에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發付받은 事實이”를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실이”로, “拘束令狀을 請求하는 趣旨”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로, “理由를 記載하여야”를 “이유를 기재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처검사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특별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한다)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⑥ 제5항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01조의2제7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제202조 및 제203조”를 “제202조, 제203조, 제203조의2”로 한다.

제203조의 제목“(檢事の 拘束期間)”을“(검사의 구속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檢事が 被疑者を 拘束한 때”를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 “司法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の 引致를”을 “수사처검사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로, “10日以内に 公訴를 提起하지”를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로, “釋放하여야”를 “석방하여야”로 한다.

제203조의2를 제203조의3으로 하고, 제2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03조의3(종전의 제203조의2)의 제목“(拘束其間에의 算入)”을“(구속기간에의 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03조의2) 중 “被疑者が 第200條의2·第200條의3”을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으로,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逮捕”를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로, “拘引된”을 “구인된”으로, “第202條”를 “제202조·제203조”로, “第203條의 拘束期間은 被疑者を 逮捕”를 “제203조의2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로, “拘引한”을 “구인한”으로, “起算한다”를 “기산한다”로 한다.

제203조의2(수사처검사·특별검사의 구속기간) ① 공수처법 제3조제1항제2호 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공수처법 제3조제1항제2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판사는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05조의 제목 “(拘束期間의 延長)”을 “(구속기간의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地方法院判事は 檢事の 申請에 依하여 搜查를 繼續함에 相當한 理由가”를 “지방법원판사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로, “認定한”을 “인정한”으로, “10日을 超過하지”를 “10일을 초과하지”로, “限度에서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1次에 限하여 許可할”을 “한도에서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前項의 申請에는 拘束期間의 延長의 必要를 認定할”을 “제1항의 신청 및 청구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로, “資料를 提出하여야”를 “자료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208조의 제목 “(再拘束의 制限)”을 “(재구속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依하여 拘束되었다가 釋放된 者는”을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으로, “重要한 證據를 發見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再次 拘束하지”를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로 한다.

제209조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를 “사법경찰관의”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본문 중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본다.

제210조를 삭제한다.

제213조의 제목 “(逮捕된 現行犯人の 引渡)”를 “(체포된 現行범인의 인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 아닌 者が 現行犯人を 逮捕한”을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現行범인을 체포한”으로, “即時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引渡하여야”를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로 한다.

제213조의2의 제목 “(準用規定)”을 “(준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を 逮捕하거나 現行犯人を 引渡받은”을 “규정은 사법경찰관리가 現行범인을 체포하거나 現行범인을 인도받은”으로, “準用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214조의2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제202조·제203조 및”을 “제202조·제203조·제203조의2 및”으로 한다.

제215조제1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6조의 제목 “(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強制處分)”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0條의2·第200條의3·第201條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는 경우에 必要한 때에는 令狀없이 다음 處分을”을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他人의 住居나 他人이 看守하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서의 被疑者”를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의 피의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17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청구하여야”를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청구는”을 “신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청구한”을 “검사가 청구한”으로, “발부받지”를 “검사가 발부받지”로 한다.

제218조의 제목“(승狀에 依하지 아니한 押收)”를“(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로 하고, 같은 조 중 “檢事, 司法警察官은 被疑者 其他人の 遺留한 物件이나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가 任意로 提出한 物件을 承狀없이 押收할”을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로 한다.

제218조의2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지휘를 받아야”를 “의견을 들어야”로 한다.

제219조의 제목“(準用規定)”을“(준용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第106條, 第107條, 第109條 乃至 第112條, 第114條, 第115條第1項 本文, 第2項”을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第140條, 第141條, 第333條第2項, 第486條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本章의 規定에 依한 押收, 搜索 또는 檢證에 準用한다”를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제115조제1항 본문의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보고 제486조 제1항의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제221조제1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한다.

제221조의2의 제목 “(證人訊問의 請求)”를 “(증인신문의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犯罪의 搜查에”를 “범죄의 수사에”로, “事實을”을 “사실을”로, “明白히 認定되는 者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出席”을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따른 출석”으로, “陳述을 拒否한 境遇에는 檢事は 第1回 公判期日 前에 限하여 判事에게 그에 對한 證人 訊問을 請求할”을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로 한다.

제221조의3의 제목 “(鑑定의 委囑과 鑑定留置의 請求)”를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檢事は 第221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을 委囑하는 境遇에 第172條第3項의 留置處分이 必要할”을 “사법경찰관은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로, “判事에게”를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로, “請求하여야”를 “청구하여야”로 한다.

제221조의5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에”를 “광역공소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검찰청에”를 “광역공소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를 “광역공소청장이”로 한다.

제222조의 제목 “(變死者의 檢視)”를 “(변사자의 검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變死者 또는 變死의 疑心있는 死體가”를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로,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檢事가 檢視하여야”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여야”로 한다.

제237조의 제목 “(告訴, 告發의 方式)”을 “(고소, 고발의 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告訴”를 “고소”로, “告發은 書面”을 “고발은 서면”으로, “口述로써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게”를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檢事”를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로, “司法警察官이 口述에 依한 告訴 또는 告發을”을 “고발을”로, “調書を 作成하여야”를 “서류를 작성하여야”로 한다.

제238조의 제목 “(告訴, 告發과 司法警察官의 措置)”를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중 “司法警察官이 告訴”를 “사법경찰관이 고소”로, “告發을”을 “고발을”로, “迅速히 調査하여 關係書類와 證據物을 檢事에게 送付하여야”를 “이를 수리하여야”로 한다.

제241조의 제목 “(被疑者訊問)”을 “(피의자신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으로, “姓名, 年齡, 등록기준지, 住居와 職業을”을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로, “被疑者임에”를 “피의자임에”로, “確認하여야”를 “확인하여야”로 한다.

제242조의 제목 “(被疑者訊問事項)”을 “(피의자신문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對하여 犯罪事實과 情狀에 關한 必要事項을 訊問하여야”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로, “利益되는 事實을 陳述할 機會를”을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로 한다.

제243조의 제목“(被疑者訊問과 參與者)”를“(피의자신문과 참여자)”로 하고, 같은 조 중 “檢事が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檢察廳搜查官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參與하게 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司法警察官吏를 參與하게”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로 한다.

제243조의2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를 “사법경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한다.

제244조의4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4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

찰관은”으로 한다.

제245조의 제목“(參考人과의 對質)”을“(참고인과의 대질)”로 하고, 같은 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事實을 發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와 다른 被疑者 또는 被疑者 아닌 者와 對質하게”를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대질하게”로 한다.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5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 중 “제245조의5제2호의”를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로 한다.

제245조의7제1항 중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제19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

구할 수 있으나, 직접 보완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5조의8제1항 중 “제245조의5제2호의”를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한다”를 “하고, 제245조의5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요청 사실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요청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수사의 요청은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

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마쳐야 한다.

⑤ 검사는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제245조의9를 삭제한다.

제245조의10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를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④ 제197조의2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수사에 준용한다.

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5조의11(수사처검사 등에 관한 준용) ① 이 장의 규정 중 사법경

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수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198조의2, 제200조의3제2항, 제202조, 제205조, 제221조의5 및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수사에 이 장의 규정 중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는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며, 이 경우 검사에 대한 신청·통보·협의 및 검사의 청구·승인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6조의 제목“(他管送致)”를“(타관송치)”로 하고, 같은 조 중“檢事는 事件이 그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의 管轄에 屬하지”를“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로,“事件을 書類와 證據物과”를“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로,“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하여야”를“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로 한다.

제257조의 제목“(告訴等に 依한 事件의 處理)”를“(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檢事が 告訴”를“사법경찰관이 고소”로,“告發에 依하여 犯罪를 搜查할 때에는 告訴”를“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로,“告發을 受理한”을“고발을 수리

한”으로, “3月 以內에 搜查를 完了하여 公訴提起與否를 決定하여야”를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60조제1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고등법원”을 각각 “지방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청법」 제10조에”를 “「공소청법」 제57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261조의 제목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를 “지방법원에”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고등법원과”를 “지방법원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고등법원에”를 “지방법원에”로 한다.

제262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각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31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를 “수사기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를 “사법경찰관 앞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를 “제3항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를 “사법경찰관이”로 한다.

제337조의 제목 “(刑의 消滅의 裁判)”을 “(형의 소멸의 재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第81條”를 “제81조”로, “同 第82條의 規定에 依한 宣告는”을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으로, “事件에 關한 記錄이 保管되어”를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로, “檢察廳에 對應하는 法院에 對하여 申請하여야”를 “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로 한다.

제361조의2제3항 중 “被告人이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를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로, “原審法院에”를 “원심법원에”로, “檢察廳檢事는 第1項의”를 “공소청검사는 제1항의”로, “14日이내에 被告人을 抗訴法院所在地의 矯導所또는 拘置所에 移送하여야”를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로 한다.

제417조 중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으로, “對하여 不服이”를 “대하여 불복이”로,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을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으로, “檢事の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에”를 “검사의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로 한다.

제428조의 제목 “(再審과 執行停止의 效力)”을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再審의 請求는 刑의 執行을 停止하는 效力이”를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但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は 再審請求에 對한 裁判이”를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로, “刑의 執行을 停止할”을 “형의 집행을 정지할”로 한다.

제460조의 제목 “(執行指揮)”를 “(집행지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裁判의 執行은”을 “재판의 집행은”으로, “裁判을”을 “재판을”으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が 指揮한다”를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但”을 “다만”으로, “裁判의 性質上 法院”을 “재판의 성질상 법원”으로, “法官이 指揮할 境遇에는 例外로”를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上訴의 裁判”을 “상소의 재판”으로, “上訴의 取下로 因하여 下級法院의 裁判을 執行할 境遇에는 上訴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が 指揮한다”를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但”을 “다만”으로, “訴訟記錄이 下級法院”을 “소송기록이 하급법원”으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에 있는 때에는 그 檢察廳檢事が 指揮한다”를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에 있는 때에는 그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로 한다.

제467조의 제목 “(死刑執行의 參與)”를 “(사형집행의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死刑의 執行에는 檢事와 檢察廳書記官과 矯導所長”을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으로, “拘置所長이나”를 “구치소장이나”로, “代理者가 參與하여야”를 “대리자가 참여하여야”로 한다. 제468조의 제목 “(死刑執行調書)”를 “(사형집행조서)”로 하고, 같은 조 중 “死刑의 執行에 參與한 檢察廳書記官은 執行調書を 作成하고 檢事와 矯導所長”을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으로, “拘置所長이나”를 “구치소장이나”로, “代理者와”를 “대리자와”로 한다.

제470조의 제목 “(自由刑執行의 停止)”를 “(자유형집행의 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가 心神의 障礙로 意思能力이 없는 狀態에”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로,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로,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の 指揮에 依하여 心神障礙가 回復될”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로, “刑의 執行을 停止한다”를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로 한다.

제4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로, “各 號의 1에 該當한 事由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로,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를 “형을 선고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로,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刑의 執行을 停止할”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檢事가 前項의 指揮를”을 “검사가 제1항의 지휘를”로, “고등검찰청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을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로 한다.

제471조의2제1항 중 “지방검찰청에”를 “지방공소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를 “지방공소청장이”로 한다.

제477조제5항 전단 중 “조사를”을 “조치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수사”는 “재판의 집행을 위한 조치”로 본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u>검찰청</u>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 ⑤ (생략)</p> <p>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u>검찰청</u>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p> <p>⑦ (생략)</p> <p>第62條(檢事에 對한 送達) 檢事에 對한 送達은 書類를 所屬檢察廳에 送付하여야 한다.</p> <p>第67條(法定期間의 연장)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p> | <p>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 ----- ----- -----<u>공소청</u>-----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u>공소청</u>----- -----.</p> <p>⑦ (현행과 같음)</p> <p>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공소청에 송부하여야-----.</p> <p>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p> |

또는 檢察廳 所在地와의 거리 및 交通通信의 불편정도에 따라 大法院規則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第81條(拘束令狀의 執行) ① 拘束令狀은 檢事の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裁判長,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가 그 執行을 指揮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第83條(管轄區域 外에서의 拘束令狀의 執行과 그 囑託) ① 檢事は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 外에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指揮할 수 있고 또는 當該 管轄區域의 檢事에게 執行指揮를 囑託할 수 있다.

또는 공소청 소재지-----

----교통통신-----

----대법원규칙-----

-----.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

-----경찰서 등 수사

기관 유치장에-----

-----.

-----.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檢사의 촉탁에 依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 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외에서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

② 司法警察官吏는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 外에서 拘束令狀을 執行할 수 있고 또는 當該 管轄區域의 司法警察官吏에 對하 執行을 囑託할 수 있다.

第84條(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對한 搜查 囑託) 被告人의 現在地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長은 高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搜查와 拘束令狀의 執行을 囑託할 수 있다.

第115條(令狀의 執行) ① 押收· 搜索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② (생략)

第137條(拘束令狀執行과 搜索) 檢事, 司法警察官吏 또는 第81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법원사무관등이 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

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外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 對하 집행을 촉탁할-----.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對한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分明하지-----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지방공소청장에게----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 압수· 수색영장은 檢事의 촉탁에 依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但만, 必要한 경우에는 재판장은-----집행을 命할-----.

② (현행과 같음)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사법경찰관리-----제81조 제2항에 따른-----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必要한-----

<신 설>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간의 협력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

-----그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 이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보완수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1. 2. (생략)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

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
-----지체-----

-----.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완수사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각급 공소청의 장은-----

--직무배제, 교체 또는-----

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있다. 이 경우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⑤ 특정 수사관서에서 보완수사요구를 적정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각급 공소청의 장은 보완수사할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이하 “수사처 검사”라 한다)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전단 및 제5항을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수사처 검사”로 본다.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은

-----경우 검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검사는-----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이 경우 검사는 제19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직접 보완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⑧ 각급 공소청의 장은-----

<신 설>

<신 설>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송부 요구 여부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여부 및 그 처리 결과를 신고를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검사에게 신고의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신속하게 그 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가 수사 또는 시정조치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할-----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
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
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
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
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신 설>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조
정을 국무조정실에 두는 수사
권관할조정협의회에 신청할---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
의 절차 및 수사권관할조정협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
원에 대한 수사) ① 수사기관
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수
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
원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
관의 장이 이첩 요청을 하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관
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이첩하여야 한다.

제198조(준수사항) ① (생략)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 (생략)

第198條의2(檢事의 逮捕·拘束場所 監察) ① 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不法逮捕·拘束의 有無를 調査하기 爲하여 檢事로 하여금 每月 1回 以上 管下 搜查官署의 被疑者의 逮捕·拘束場所를 監察하게 하여야 한다. 監察하는 檢事는 逮捕 또는 拘束된 者를 審問하고 關聯書類를 調査하여야 한다.

제198조(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리와-----

알게 된-----

-----.

③ 사법경찰관리와-----

-----.

④ (현행과 같음)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 점검) 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매월 1회 이상 관찰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점검하게-----
-----.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② 檢事는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逮捕 또는 拘束된 것이라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는 즉시 逮捕 또는 拘束된 者를 釋放하거나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正當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管轄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 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の 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の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 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

②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사법경찰관은-----

-----.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다액 5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 ⑤ (생략)

第200條의3(緊急逮捕)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이 경우 緊急을 요한다 함은 被疑者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逮捕令狀을 받을 時間的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2. (생략)

② 司法警察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

에-----사건에-----
피의자가-----주거가-----
-----제
200조에 따른-----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죄
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영장 없이 피의자
를 체포할----- . -----긴급을
-----피의자를-----
-----체포영
장을-----시간적-----
-----.

1. 2. (현행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우에는 즉시 檢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 緊急逮捕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④ (생략)

第200條의4(緊急逮捕와 令狀請求期間)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檢事는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④ (현행과 같음)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피의자를 구속하고자-----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사가-----
-----아니하여 사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拘束”은 이를 “逮捕”로, “拘束令狀”은 이를 “逮捕令狀”으로 본다.

第201條(拘束) ①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第70條第1項各 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檢事는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令狀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の 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の 拘束令狀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犯罪에 關하여는 被疑者가 一定한 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보며, 제81조제1항 본문 중 “검사의 촉탁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본다.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처검사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특별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한다)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② ~ ④ (생략)

⑤ 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그 被疑者에 對하여 前에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發付받은 事實이 있을 때에는 다시 拘束令狀을 請求하는 趣旨 및 理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신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 ⑥ (생략)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검사,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실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이유를 기재하여야-----.

⑥ 제5항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공소청-----
-----제202조, 제203조, 제203조의2-----
-----.

⑧ ~ ⑩ (생략)

第203條(檢事の拘束期間) 檢事が
被疑者を拘束한 때 또는 司法
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の 引致
를 받은 때에는 10日以内に 公
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면 釋放
하여야 한다.

<신설>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사법경찰관-----수사
처검사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10일 이내에 공
소를 제기하지-----석방
하여야-----.

제203조의2(수사처검사·특별검
사의 구속기간) ① 공수처법
제3조제1항제2호 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하거나 공수처법 제3조제1항제
2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
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
면 석방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판사는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청구에 의하
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구속

第203條의2(拘束其間에 의 算入)

被疑者가 第200條의2·第200條의3·제201조의2제2항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逮捕 또는 拘引된 경우에는 第202條 또는 第203條의 拘束期間은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引한 날부터 起算한다.

第205條(拘束期間의 延長) ① 地

方法院判事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搜查를 繼續함에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10日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1次에 限하여 許可할 수 있다.

② 前項의 申請에는 拘束期間의 延長의 必要를 認定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第208條(再拘束의 制限)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依하여 拘束되었다가 釋放된 者는 다른

기간의 延長을 1차에 限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03조의3(구속기간에 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12조의 規定에 의하여 체포-----구인된-----제202조·제203조-----제203조의2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구인한-----기산한다.

제205조(구속기간의 延長) ① 지

방법원판사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인정한-----10일을 초과하지-----한도에서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延長을 1차에 限하여 허가할-----.

② 제1항의 신청 및 청구에는 구속기간의 延長의 必要를 인정할-----자료를 제출하여야-----.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 사법

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第216條와 第217條의 規定에
依한 搜查를 하는 境遇에 緊急
을 要할 때에는 事後에 報告할
수 있다.

第213條(逮捕된 現行犯人の 引渡)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 아
닌 者가 現行犯人을 逮捕한 때
에는 卽時 檢事 또는 司法警察
官吏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② (생략)

第213條의2(準用規定) 제87조, 제

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
을 逮捕하거나 現行犯人을 引
渡받은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14條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

심사) ① (생략)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
한 檢事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
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
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
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
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 ⑫ (생략)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
행범인을 체포한-----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인
도하여야-----.

② (현행과 같음)

제213조의2(준용규정) -----

-----규정은 사법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
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준용한다.

第214條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법경찰관은-----

-----.

③ ~ ⑫ (현행과 같음)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
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第216條(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強制處分) ① 檢事 또는 司法
警察官은 第200條의2·第200條
의3·第201條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는 경우에 必要한
때에는 令狀없이 다음 處分을
할 수 있다.

1. 他人의 住居나 他人이 看守
하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서의 被疑者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
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
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逮捕現場에서의 押收, 搜索,
검증

② 前項第2號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告人에
對한 拘束令狀의 執行의 境遇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사법경찰관은 제
200조의2·제200조의3·제201
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
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
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
장 없이 다음 처분을-----
-----.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
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서의 피의자-
-----.

-----.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사법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

에 準用한다.

③ (생략)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사법경찰관은-----

-----.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수색영장
을 발부 받아야-----.

--신청은-----
-----.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청구한-----
-----검사가 발부받지-----
-----.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第221條의2(證人訊問의 請求) ①

범죄의 搜查에 없어서는 아니 될 事實을 안다고 明白히 認定 되는 者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出席 또는 陳述을 拒否한 境遇에는 檢事는 第1回 公判期日 前에 限하여 判事에게 그에 對한 證人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第221條의3(鑑定의 委囑과 鑑定 留置의 請求) ①

檢事는 第221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을 委囑하는 境遇에 第172條第3項의 留置處分이 必要할 때에는 判事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

-----.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

범죄의 수사에----- --사실을-----명백히 인정 되는 자가 제221조에 따른 출석----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

유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은 제221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는 판사에게----청구하여야-----.

② (현행과 같음)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

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 ⑤ (생략)

第222條(變死者의 檢視) ① 變死者 또는 變死의 疑心있는 死體가 있는 때에는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檢事가 檢視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第237條(告訴, 告發의 方式) ① 告訴 또는 告發은 書面 또는 口述로써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게 하여야 한다.

②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口述에 의한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

② -----
-----광역공소청에

-----.

③ -----

-----광역공소청장이-----.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고발은 서면-----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서류를 작성하여야-----.

第238條(告訴, 告發과 司法警察官의 措置) 司法警察官이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迅速히 調査하여 關係書類와 證據物을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241條(被疑者訊問)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먼저 그 姓名, 年齡, 등록 기준지, 住居와 職業을 물어 被疑者임에 틀림없음을 確認하여야 한다.

第242條(被疑者訊問事項)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對하여 犯罪事實과 情狀에 關한 必要事項을 訊問하여야 하며 그 利益되는 事實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第243條(被疑者訊問과 參與者) 檢事が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檢察廳搜查官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參與하게 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司法警察官吏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이를 수리하여야-----.

제241조(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성명, 연령, 등록 기준지, 주거와 직업을-----피의자임에-----확인하여야-----.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②

사법경찰관이

③

사법경찰관의

④ (현행과 같음)

⑤ 사법경찰관은

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
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
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
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
하게 할 수 있다.

1.·2. (생략)

第245條(參考人과의 對質)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事實을 發
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
와 다른 被疑者 또는 被疑者
아닌 者와 對質하게 할 수 있
다.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
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
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
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
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사법경찰관은-----

-----.

1.·2. (현행과 같음)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사법경
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
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
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대
질하게-----
-----.

<삭 제>

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

<삭 제>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
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
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
다.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
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
치 등) (생략)

<신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
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
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

<삭제>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
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
분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
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
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
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
부통지) -----제245조
의5제1항제2호의-----

<신 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수사의 요청은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

-----하고, 제245조의5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마쳐야 한다.

⑤ 검사는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청에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

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배제,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삭 제>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생략)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생략)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97조의2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수사에 준용한다.

⑤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제245조의11(수사처검사 등에 관한 준용) ① 이 장의 규정 중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수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198조의2, 제200조의3제2항, 제202조, 제205조, 제221조의5 및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사처 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수사에 이 장의 규정 중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수사처검사 또는 특별검사는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며, 이 경우 검사에 대한 신청·통보·협의를 및 검사의 청구·승인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56條(他管送致) 檢事는 事件이 그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의 管轄에 屬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件을 書類와 證據物과 함께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第257條(告訴等に 依한 事件의 處理) 檢事가 告訴 또는 告發

제256조(타관송치) 檢事는 사건이 그 소속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이 고소--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1. ~ 3. (현행과 같음)

③ -----

-----지방공소청장-----

-----.

④ (현행과 같음)

제261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지방공소청장-----

-----지방법원에-----

-----.

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 ④ (생략)

⑤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방공소청장-----

-----.

1. -----

-----지
방법원과-----
-----.

2. -----

-----지방법원에-----.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지방공소
청장-----
-----.

-----지방공소청장-----

-----.

⑥ -----

지방공소청장-----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

-----.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사기관이-----

-----.

④ 사법경찰관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事件에 關한 記錄이 保管되어 있는 檢察廳에 對應하는 法院에 對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第361條의2(訴訟記錄接受와 通知)

① · ② (생략)

③ 被告人이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경우에는 原審法院에 대응한 檢察廳檢事는 第1項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日이내에 被告人을 抗訴法院所在地의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移送하여야 한다.

第417條(同前)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關한 처분에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그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の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第428條(再審과 執行停止의 效力) 再審의 請求는 刑의 執行을 停止하는 效力이 없다. 但 管轄法

사건에 關한 기록이 保管되어-----공소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361條의2(訴訟記錄接受와 通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원심법원에-----공소청검사는 제1항의-----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第417條(同前)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의 환부에 關한-----

-----대하여 불복이-----직무집행지의 管轄법원-----검사의 소속 公소청에 對응한 법원에-----

-----.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다만,

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は 再
審請求에 對한 裁判이 있을 때
까지 刑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第460條(執行指揮) ① 裁判의 執
行은 그 裁判을 한 法院에 對
應한 檢察廳檢事が 指揮한다.
但, 裁判의 性質上 法院 또는
法官이 指揮할 境遇에는 例外
로 한다.

② 上訴의 裁判 또는 上訴의
取下로 因하여 下級法院의 裁
判을 執行할 境遇에는 上訴法
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が 指
揮한다. 但, 訴訟記錄이 下級法
院 또는 그 法院에 對應한 檢
察廳에 있는 때에는 그 檢察廳
檢事が 指揮한다.

第467條(死刑執行의 參與) ① 死
刑의 執行에는 檢사와 檢察廳
書記官과 矯導所長 또는 拘置
所長이나 그 代理者가 參與하
여야 한다.

② (생략)

第468條(死刑執行調書) 死刑의 執
行에 參與한 檢察廳書記官은

관할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
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형의 집행을 정지할-----
----.

제460조(집행지휘) ① 재판의 집
행은----재판을----법원에 대
응한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
다만--재판의 성질상 법원---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
외로-----.

② 상소의 재판-----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
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
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가 지
휘한다. 다만--소송기록이 하
급법원-----법원에 대응
한 공소청에 있는 때에는 그
공소청검사가 지휘한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사
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
장-----구치
소장이나----대리자가 참여하
여야-----.

② (현행과 같음)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
행에 참여한 검사는 집행조서

執行調書を 作成하고 檢事와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第470條(自由刑執行의 停止) ①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가 心神의 障礙로 意思能力이 없는 狀態에 있는 때에는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 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心神障礙가 回復될 때까지 刑의 執行을 停止한다.

② · ③ (생략)

第471條(同前) ①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 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刑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1. ~ 7. (생략)

를 작성하고 교도소장----- 구치소장이나----대리자와-----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공소청검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471條(同前)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對하여-----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형을 선고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검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1. ~ 7. (현행과 같음)

| | |
|---------|--------------------------|
| ⑥ (생 략) | <u>본다.</u> ⑥ (현행과 같음) |
|---------|--------------------------|